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9. 3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: 2021년 8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‘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아래 항목을 추가함 (안 제5조)
 -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
 -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(안 제6조)
-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 보완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

신설함으로써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2조에 “보호관찰 대상 학생”을 ‘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’으로 정의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‘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’의 내용에 “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”과 “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”을 새로 추가하였음.
- 안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때 개인별로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면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,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업중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’을 추가하였음.
- 그 밖에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9조의 개정 규정은 기존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